

이천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04. 11. 22(월)
산업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11월 8일 이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11월 9일
다. 상정일자 : 제73회 이천시의회(임시회)
 제3차(2004. 11. 20)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산업복지국장 윤희문)

가. 제안이유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고 함.

나. 주요골자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의무사항 중 화장 및 납골의 확산을 위한 시책을 강구·시행할 수 있도록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사시설 중 납골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 및 보건위생상 표지 등의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7조).
- 납골당 사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토지 잠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정함(안 제8조).

- 공설장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1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박규하)

- 장사등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 화장납골의 확산을 유도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정의·적용범위·시장책무 등을 규정하였고
- 제5조 및 제6조는 묘지 등의 수급계획수립과 납골시설의 설치장소를 정하였으며
- 제7조 내지 제10조는 묘지 등의 설치제한지역·분묘의 설치기간·시범장사시설의 설치·관리 등 민간자본의 유치를 규정하였고
- 제11조 내지 제13조는 공설장사시설의 명칭 및 위치·사용허가·사용자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으며
- 제14조 내지 제16조는 묘지의 면적제한 및 분묘 등의 설치와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규정하였고
- 제17조 및 제18조는 관외거주자에 특례와 사용료 등의 면제를 정하였으며
- 제19조와 제20조는 위탁운영과 묘지의 사전매매 등을 규정하였고
- 제21조 및 제22조는 사용허가권 등의 승계와 사용허가 등의 취소를 규정하였으며
- 제23조와 제24조는 원상복구 및 변상과 권한위임을 할 수 있는 위임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일부수정의결(만장일치)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일자 및 제안자 : 2004. 11. 20. 산업건설위원회 이광희 위원장외 6인

나. 수정이유 :

-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천시 특성에 맞는 장사시설의 설치와 시설의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는 하나,
- 조례 내용중 의미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문구가 일부 있어 이에 대한 조정

다. 수정주요골자

- 공설장사시설 사용 범위 수정(안 제13조 제2항 제4호)
 - 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안 제17조) : 근거 조항 조정
 - 제13조제2항제4호 → 제1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8. 기타사항 : 없 음

※ 첨부: 1. 이천시장사시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이천시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3조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안 제17조 중 “제4호”를 “제1호,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제 정 안 | 수 정 안 |
|--|---|
| <p>제13조 (사용자의 범위) ①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한 개장한 유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6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u>기타 시장이 장사시설의 수급상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u> | <p>제13조 (사용자의 범위) ①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월이전부터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p> <p>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배우자중의 1인이 관할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관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유골의 경우. 다만, 법률 제23조 규정에 의한 개장한 유골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6월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연고자(직계자녀에 한함)가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u>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에게 관내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u> |
| <p>제17조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제2항<u>제4호</u>의 규정에 의한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p> | <p>제17조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 제13조제2항<u>제1호, 제3호 및 제4호</u>의 규정에 의한 관외 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6조제1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의 50퍼센트 상당액을 가산 징수할 수 있다.</p> |